제 1480 호
1990. 3. 26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고 건
편집인 : 공 보 관 유 천 수
전 화 : 731-6111~3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규 칙
제2331호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운영규칙중개정규칙 ····· 3

◉ 고 시
제 73 호 도시공원시설사용료결정고시 ····· 3
제 74 호 도시공원시설사용료결정고시 ····· 4
제 77 호 광견병예방주사실시 ····· 5
제 82 호 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학원수강료기준액에관한고시 ····· 5

◉ 공 고
제 156 호 지방간호직8급임용후보자명부유효기간연장 ····· 6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165호 관인신조교부공고 7
제166호 관인신조교부공고 7

◉ 구 고 시
제 1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7

◉ 구 공 고
제 22 호 도시계획안공고 14
제 27 호 도시공원점용허가 14
제 28 호 도시계획사업(시장)변경허가 16
제 28 호 도시계획안공고 16

◉ 사업소고시
제 9 호 허천점용허가(선박운항허가) 17

◉ 사 령

규 칙

◉서울특별시규칙제2331호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운영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2) 급 여 월 액 단위 : 원

호 봉	예술단체	비 고	호 봉	예술단체	비 고
정	801,000		18	552,000	
1	748,000		19	532,000	
2	738,000		20	516,000	
3	725,000		21	499,000	
4	714,000		22	491,000	
5	707,000		23	473,000	
6	696,000		24	463,000	
7	686,000		25	453,000	
8	681,000		26	427,000	
9	667,000		27	403,000	
10	658,000		28	373,000	
11	651,000		29	342,000	
12	637,000		30	302,000	
13	624,000		31	267,000	
14	613,000		32	252,000	
15	596,000		33	227,000	
16	582,000		34	200,000	
17	568,000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73호

도시공원시설사용료결정고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6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시설중 운동사용의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990. 3.

서 울 특 별 시 장

종 별	공 원 별	시 설 명	사용기준	금 액	비 고
운 동 시 설	동빙고근린공원 (용산구 용산동 6가 69-162)	골 프 연 습 장	1박스	4,500원	

◉서울특별시고시제74호

도시공원시설사용료결정고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6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시설중 유희시설의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990. 3.

서 울 특 별 시 장

종 별	공 원 별	시 설 명	사용기준	금 액	비 고
유 희 시 설	석촌호수 근린공원(송파구 잠실동외 1필지)	고공전투기 (슈퍼반스토머)	1회	2,000	
			청소년1회	1,800	
			어린이1회	1,000	
		어린이보트 (소형보트)	1회	1,800	
			청소년1회	1,500	
			어린이1회	1,000	
		어린이특급 (어린이코스타)	1회	1,100	
			청소년1회	900	
			어린이1회	600	
		곡예전망차 (삼각바퀴)	1회	2,000	
			청소년1회	1,800	
			어린이1회	1,000	
		범 퍼 카	1회	1,100	
			청소년1회	900	
			어린이1회	600	
		월드모노레일 (모노레일궤도차)	1회	2,000	
			청소년1회	1,500	
			어린이1회	1,000	
		자동차경주 (어린이오토)	1회	1,000	
			청소년1회	800	
			어린이1회	600	
		고공낙하 (어린이낙하산)	1회	700	
			청소년1회	700	
			어린이1회	700	

종 별	공 원 별	시 설 명	사용기준	금 액	비 고
		제네바유람선	어 른1회	1,800	
		(유람선)	청소년1회	1,500	
			어린이1회	1,000	
		독수리권대	어 른1회	1,200	
		(어린이비행기)	청소년1회	1,000	
			어린이1회	700	
		전자오락게임			
		· 헬리콥타전투	1 회	400	
		· 혹 성 탈 출	1 회	400	
		· 우주의침략자	1 회	300	
		· 사 격 게 임	1 회	200	
		· 미 공 게 임	1 회	300	
		· 변 조 인 간	1 회	200	
		· 초인의결투	1 회	200	
		· 유 령 의 집	1 회	200	
		· 자동차경주	1 회	200	
		· 5 종 게 임	1 회	200	

◉서울특별시고시제77호

광견병예방주사실시

다음과 같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1990. 3.

서 울 특 별 시 장

1. 목적 : 광견병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함.
2. 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3. 대상 : 관내에서 기르는 모든개(3개월령 이상)
4. 장소 : 인근 동물병원
5. 기간 : '90. 4. 23-'90. 5. 12
6. 기타 : 본 기간중 예방주사를 필하지 않은 개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개 주인은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됩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82호

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학원수강료 기준액에관한고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4호와 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학원운영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습반별 수강료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3. 23

서 울 특 별 시 장

1. 교습반별 수강료 기준액 (단위 : 원)

교습반별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제2종 보통	속성 1종대형	속성 1종보통	속성 2종보통	도로연수 (시간당)
수강료 기준액	154,200	189,000	181,700	153,700	77,000	85,000	69,900	8,000

2. 제1항의 "교습반별 수강료 기준액"에 대한 교습기준은 서울특별시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정한 교습시간을 그 기준으로 한다. 도로 연수반의 "수강료 기준액"에 대한 교습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156호

지방간호직8급임용후보자명부유효기간연장

서울특별시에서 1989년 3월 23일 등록받은 지방간호직8급 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연장하였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1990. 3. 21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당초유효기간 : 1990년 3월 22일

나. 유효기간연장 : 1991년 3월22일(1년간)

다. 연장 대상자 : 홍명숙외52명(아래참조)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116	황 영 숙	57. 2.20	116	김 정 임	63. 2.12	116	김 미 제	61. 6.15
116	이 성 희	57. 1. 2	116	이 미 희	60. 4.13	116	김 정 열	55. 4.24
116	이 영 미	60. 6.10	116	이 성 임	49. 5. 9	116	이 희 자	60.11.25
116	최 계 화	62. 8. 5	116	김 미 정	64.12.20	116	김 인 자	57. 1.25
116	정 순 례	63. 1.12	116	김 영 선	63. 1.19	116	박 희 숙	62. 5.20
116	장 숙 자	64.12.20	116	황 은 아	65. 1.12	116	변 정 순	61.11.25
116	강 은 희	66. 4.23	116	이 규 영	61. 6. 9	116	한 태 순	61. 8.19
116	윤 미 령	63. 6.30	116	박 창 숙	62. 6.23	116	김 경 탕	52. 9. 7
116	김 영 주	63. 2. 5	116	김 혜 경	64. 2.15	116	장 정 순	66.10. 5
116	우 태 욱	62. 5. 5	116	최 경 순	61. 3.22	116	정 종 숙	65.10.10
116	이 정 희	54.12. 9	116	김 금 자	57. 1.10	116	김 형 덕	61.12. 2
116	김 진 경	60. 1.30	116	최 연 실	65. 7.19	116	박 종 숙	65. 5. 4
116	이 영 숙	61.12. 6	116	김 화 경	56. 7.12	116	신 숙 례	62. 5.10
116	장 민 영	60. 1.30	116	유 경 희	61. 4. 1	116	위 성 숙	52. 3.11
116	김 정 경	64. 9.28	116	김 영 희	56.10.18	116	김 경 남	61. 1.10
116	김 남 희	63.12. 9	116	임 명 옥	63. 8.14	116	김 길 자	65. 25
116	최 순 란	60. 5.21	116	정 해 복	58. 6. 4	116	외 숙 희	63. 28
116	곽 명 순	64. 3.28	116	문 선 인	57. 4.22	(이 상 53 명)		

◉서울특별시공고제165호

관 인 신 조 교 부 공 고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설치조례('90. 3. 20 조례259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장"의 관인을 관인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5조와 서울특별시 관인규칙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교부함을 동규정 제9조 및 동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90. 3. 23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용개시 일자 : 1990년 3월 24일
2. 관인 교부내역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장의인

◉서울특별시공고제166호

관 인 신 조 교 부 공 고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설('90. 2. 15 조례258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장"의 관인을 관인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5조와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교부함을 동규정 제9조 및 동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90. 3. 24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용개시일자 : 1990년 3월 26일
2. 관인교부내역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장인

구 고 시

◉성동구고시제1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고시제149호 ('79. 4. 10) 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255의1 - 금호동 103의1번지에 대하여 도로 확장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3.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255의1 - 금호동 103의 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확장)
명칭 : 강변도로-현대극장간 도로 확장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폭 : 25m, 연장 : 35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성동구청장
주소 : 성동구 자양동 220-147

마. 사업의 착수, 준공 예정 년월일
착수 예정 년월일 : 1990. 2. 19
준공 예정 년월일 : 1991.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수용또는 사용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토·수법제4조3항의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성동구 금호4가동	254	전	149㎡	은평구 불광동 446-9	최해일	-	-	-	도로
2	〃	201	〃	251㎡	성동구 금호동 1가 1760	허 진	-	-	-	저환장부지
3	〃	194	대지	83㎡	성동구 금호4가 194	〃	1. 압 류 ○원인 : '89.12.11 시세 채납 처분에 의한 압류	성동구 자양동 220-147	성동구청	주택부지
4	〃	193	〃	56㎡		서울특별시	-	-	-	도로
5	〃	192-2	〃	105㎡	영등포구 신길동 1367-1 (대방전설 아파트 다동 207호)	윤정옥외 2인	-	-	-	주택부지
6	〃	192-1	〃	281㎡	성동구 금호4가	허정매	-	-	-	〃
7	〃	66-6	〃	48㎡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26-301호	조남재	1. 근저당권 설정 ○원인 : '87. 9. 9 설정 계약	경남 함양군 안의면 당분리 182-1	안양단위 농협조합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수용또는 사용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토·수법제4조3항의 관계인 주소	토·수법제4조3항의 관계인 성명	비고
							○채권최고액 : 8천만원 ○채무자 : 조남재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26-301호 ○근저당권자 : 안양 단위농협조합(경남 함양군 안의면 당분리 182-1) 2. 지상권 설정 ○원인 : '87. 9. 9 계약 ○목적 및 범위 : 벽돌조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 '87. 9. 9부터 만 30년 ○지상권자 : 경남 함양군 안의면 당분리 182-1			
8	성동구 금호4가	191	대지	112㎡	성동구 금호동 4가 191	이병근	1. 근저당권 설정 ○원인 : '84. 8. 6 설정	성동구 금호4가 677	금호 4가 새마을금고	주택부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수용또는 사용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토·수법제4조3항의 관계인 주소	토·수법제4조3항의 관계인 성명	비고
							계약 ○채권최고액 : 8백만원 ○채무자 : 이병근 성동구 금호동4가 191 ○근저당권자 : 금호4가 새마을금고 성동구 금호4가 677 ○공동담보 : 건물 191번지			
9	성동구금호4가	109-1	대지	20㎡		재무부	-	-	-	도로
10	〃	191-2	대	119㎡		〃	-	-	-	〃
11	〃	109-3	대지	3㎡	성동구 금호4가 109-3	김판용	1. 가압류 ○원인 : '88. 3. 9-동부 지원 ○권리자 : 박성래 성동구 옥수동 533-1	성동구 옥수동 533-1	박성래	주택부지
12	〃	109-2	〃	40㎡	성동구 금호4가 109-2	이석봉	1. 근저당권 설정 ○원인 : '82. 8.19 설정 계약	성동구 금호4가 677-1	금호4가 마을금고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수용또는 사용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토·수법제4조3항의 관계인 주소	토·수법제4조3항의 관계인 성명	비고
							○채권최고액 : 8백만원 ○채무자 : 이석봉 성동구 금호4가 109-2 ○근저당권자 : 금호4가 마을금고 (성동구 금호동4가 677-1) ○공동담보 : 금호동4가 109-2의 건물			
13	성동구 금호4가	106-1	대지	17㎡	성동구금호4가 1143	박영원	-	-	-	
14	〃	104-2	〃	76㎡		재무부	-	-	-	
15	〃	103-1	도로	106㎡		성동구청	-	-	-	
16	〃	191-1	대	40㎡		재무부	-	-	-	
17	〃	177	〃	3㎡	금호동 318	안재만	-	-	-	도로
18	〃	106-2	대지	1	금호동106-2	임동희	-	-	-	주택부지

○건물조서

연번	지번	구조 (지붕/벽체)	주용도	층별면적 층	층별면적 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토·수법제4조3항의 관계인 주소	토·수법제4조3항의 관계인 성명	비고
1	성동구 금호4가	스라브/세멘 벽돌	점포및 주택	1	55㎡	성동구금호4가 194	허진	-	-	-	가옥대장상 면적

연번	지번	구조 (지붕/벽체)	주용도	층별면적 층	층별면적 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토·수법제4조3항의관계인 주소	토·수법제4조3항의관계인 성명	비고
	194	스레트/ 세멘브럭									점포27.27㎡ 주택 9.85㎡
2	성동구 금호4가 192-2	스레트/ 세멘브럭	점포 및 주택	1	105㎡	영등포구 신길동 1367-1 대방전철(아) 다동207호	윤정옥 외 2인	-	-	-	가옥대장상 면적 41.49㎡
3	〃 192-1	와즙/세멘 브럭	〃	1	197㎡	성동구 금호4가 192	허정매	-	-	-	가옥대장상 면적36.50㎡
4	〃 191	스레트/ 세멘브럭	〃	1	77㎡	성동구 금호4가 191	이병근	1. 근저당권 설정 ○원인 : '84. 8. 6-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8백만원 ○채무자 : 이병근 성동구 금호동4가191 ○근저당권자 : 금호4가 새마을금고 성동구 금호4가 677-1 ○공동담보 : 토지 191	성동구 금호4가 677-1	금호4가 새마을 금고	가옥대장상 면적 47.47㎡
5	성동구	스레트/	점포	1	37㎡	〃	〃	-	-	-	무허가

연번	지번	구조 (지붕/벽체)	주용도	층별면적 층	층별면적 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토·수법제4조3항의관계인 주소	토·수법제4조3항의관계인 성명	비고
	금호4가 191-2	세멘브럭									
6	〃 109-3	기와/부럭	점포	1	9㎡	성동구 금호4가 109-3	김판용		-	-	무허가
7	〃 109-2	〃	주택	1	9㎡	〃 109-2	이석봉	1. 근저당권 설정 ○원인 : '82.8.19.설정계약 ○채권최고금액 : 8백만원정 ○채무자 : 이석봉 성동구 금호4가 109-2 ○근저당권자 : 금호4가 마을 금고 (성동구 금호동4가 677-1) ○공동담보 : 1. 9-2토지	성동구 금호4가 677-1	금호4가 마을금고	가옥대장상 면적 29.50㎡
8	〃 109-1	〃	음식점	1	35㎡	금호3가 206	이송길		-	-	무허가
9	〃 106-1	스라브/연와조	주택	2층 1층	18㎡ 25㎡	〃 106-3	박영원		-	-	가옥대장상 면적 지층 : 11.31 1층 : 58.68 2층 : 40.50

제1490호 시 보 1990. 3. 26 18-13

구 공 고

◉성동구공고제22호

도 시 계 획 안 공 고

1. 도시계획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2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때는 공람기일내에 의견서를 공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90. 3. 22 - '90. 4. 5(14일간)

나. 공람장소 : 성동구청도시정비과(450-1385)

1990. 3. 22

성 동 구 청 장 ㊞

○도시계획안(도로)

구분	등급	폭원	연장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6	8m 행당동128-859	행당동128-870	
기정	소로	8	270m 옥수동 556	옥수동 556	
변경	소로	8	245m 옥수동 556	옥수동 556	위치변경(L=25m 축소)

○도시계획안(공원)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기정	어린이공원	옥수동 528	599.9	
변경	〃	〃	426.9	감173㎡(도로편입으로 감소)
기정	어린이공원	옥수동 497-9	330.3	
변경	〃	〃	0	해제

◉동작구공고제27호

도 시 공 원 점 용 허 가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28-1호(사당 제1어린이 공원) 에 대하여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허가하고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90. 3. 20

동 작 구 청 장 ㊞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28-1호

나. 공원의명칭 : 사당 제1어린이 공원

다. 점 용 자 : 관악경찰서장

라. 점용목적 : 사당1동 치안확보를 위한 파출소 신축

마. 점용면적 : 60.62㎡

바. 시설규모 : 벽돌건물 가로 7.8m, 세로 7.7m (2층)

사. 점용기간 : 1990. 3. - 영구

아. 관계도면 : 생략

도 시 공 원 점 용 허 가 증

점용자	성 명	관악경찰서장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초구 방배2동 370-1		
공원의 명칭		사당 제1어린이 공원		
허가사항	점용목적	사당1동 파출소 신축		
	장소 및 면적	장 소 : 동작구 사당동 1028-1 면 적 : 60.63㎡ (18.34평)		
	시설규모	벽돌건물 가로 7.8m, 세로 7.7m (2층)		
	기 간	1990. 3. - 영구		
허가조건		별 첨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허가 합니다.

1990. 3. 20

동 작 구 청 장 ㊞

◉구로구공고제28호

도시계획사업(시장)변경허가

1. 구로구 고시 제63호 ('88. 8. 5)로 시행허가 및 구로구 고시 제72호 ('89. 7. 20), 구로구 고시 제18호 ('90. 2. 13)로 변경허가한 도시계획사업(시장)을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3.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50-6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시장)
다.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50-48 고척개발㈜
성 명 : 대표 박 사 진
라. 시행규모 : 대지면적 4,011㎡
- 당 초 : 건축면적 2,128.5㎡
연면적 : 9,876.85㎡
- 변 경 : 건축면적 : 2,249.85㎡
연면적 : 10,083.85㎡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88. 9. 29 - '90. 7. 31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생략)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 지번,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서 (생략)
아. 사업계획 : 기허가 사항과 동일(생략)

◉마포구공고제28호

도 시 계 획 안 공 고

1.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장소에서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때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람기간 : 1990. 3. 22 - 1990. 4. 5
나. 공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정비과

1990. 3. 22

마 포 구 청 장

도 시 계 획 안

시설명	구분	종류	류별	폭원	연장(m)	시점	종점	비고
도로	신설	소로	3	6	300	염리동 30의 48	염리동 24의 87	
도로	기정	〃	〃	4	220	동교동 185의 11	동교동 190의 38	폭원
	변경	〃	〃	6	220	〃	〃	변경
도로	기정	〃	2	2	50	중동 33의 25	중동 33의 12	폭원
	변경	〃	3	6	50	〃	〃	변경

시설명	구분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수도	변경	마포구 대흥동 6번지	1,250	880	감 370

사업소고시

◉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9호

하천점용허가(선박운항허가)

한강구역내 유선영업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선박운항)을 허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0. 3.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

허가년월일	운항허가척수	운항구간	허가기간	운항목적	허가를 받은자	
					주소	성명
1990. 3.	23척 ·소형유람선19척 ·황포돗단배 2척 ·나룻배 2척	한강	·소형유람선 : 90. 3. 20~ 90.10. 31 ·황포돗단배 나룻배 : 90. 3. 20~ 90. 8. 31	유선업경영을 위한 선박운항	인천직할시 북구십정동 558-10	㈜세코 대표이사 유병언

사 령

◎1990년 3월 24일자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징계처분 령 제105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석영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 2, 3호에 의거 "파면"에 처함.	내무국	지방화공기원
김근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2호에 의거 "감봉1월"에 처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화공기사보
김승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2호에 의거 "감봉1월"에 처함.	〃	지방수도토목기사보
이진순	불문경고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 의결)	정신병원	지방약무기사
이철해	〃	상수도사업본부	지방화공기사보
정산전	〃	〃	〃

상수도사업본부사령

◎1990년 3월 15일자 6급이하 지방기업행정직 면직

인비번호	성명	제청 부서	제청 직위	제청 직급	현직 부서	현직 직위	현직 직급
1	이 종 만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강남수도사업소		지방기업행정서기보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공무 국외 여행 명령 통보

여행자 소속	여행자 직명	여행자 성명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지하철건설본부	시설기정 6급 3급(갑) 3급(을)	김학재 이종환 주정석 이인용	동경 오사카 대북	90. 3. 27 - 4. 5 (10일간)	시비 (7,832불)	도심지 지하굴착 및 터널시공에 관한 심포지움참석 및 지하철건설에 따른 실태조사

서 울 특 별 시 장